

#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

## 학교안전공제 제도

'교육활동'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피해,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의 '질병'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해 주는 제도



## 보상·지원 종류

- 01 요양급여(치료비, 간병비)
- 02 장해급여
- 03 간병급여
- 04 유족급여, 장례비

## 요양급여

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

## 요양급여 보상범위

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

전액 지급

비급여

일부항목 지급(세부내역서 제출 시 검토 가능)

※ 세부적인 보상범위는 공제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ggssia.or.kr>) > 공제급여 > 보상범위 참조

## 구비서류

-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<br>수 | ① 공제급여청구서(온라인 서명 시 생략가능) |
|        |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         |
|        |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            |
|        | ④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|

-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그<br>외 | • 진단서(청구액 50만원 이상 시)        |
|        | •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             |
|        | • MRI 촬영 시: 소견서(정밀진단 필요 사유) |
|        | • 보장구 사용 시: 전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등 |

## 학교안전공제회에 자주하는 질문

- ☞ 사고 발생 후 시일이 한참 지났어요. 학교에서 사고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청구 가능한가요?

학교에 공제회로 사고통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신 후 사고통지 접수 후 공제급여 청구 진행 가능하십니다.  
(단 사고 발생일로 3년 지난 사고는 청구 불가)

- ☞ 요양급여 청구 시 치료비 전액이 보상 되나요?

치료비 전액이 무조건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.  
건강보험 적용받은 급여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며,  
비급여는 세부지급 기준에 따라 일부 지급됩니다.

- ☞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하면 되나요?

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  
(3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소멸)  
청구 횟수는 여러 번 나누어서 가능하십니다.

- ☞ 실손의료(실비)보험과 중복청구가 가능한가요?

네, 공제회는 법률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 
보험과 별개로 지원 가능합니다.

- ☞ 안경파손 시 안경 구입비용은 보상되나요?

안경구입, 교체에 드는 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.  
단, 수리비는 지급 가능합니다.

- ☞ 방과 후 학생들끼리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?

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학교에서 체류하다가  
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 요양급여 청구 흐름도

### 사고발생

사고 발생 시 **지체 없이** 진행(학교안전법 제44조 제2항)

### 사고통지 (학교장)

사고 발생 시 **지체 없이** 진행(학교안전법 제44조 제2항)

### 요양급여청구 (학교 또는 학부모)

**온라인 청구 시:**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

※ 학교안전사고보장지원시스템([www.schoolsafe.or.kr](http://www.schoolsafe.or.kr)) 접속 후 청구 진행

**오프라인 청구 시:** 구비서류 우편발송(등기)

### 요양급여 지급

공제회는 접수일로부터 **14일 이내** 결정 (보완 사유 발생 시 **연장 가능**)

### 결정내역 통지 (공제회 → 학교장)

학교장은 **결정통보서** 청구인에게 발송

※ 결정내역 불복(이견) 시 90일 이내 심사 청구 가능